

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이 조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조례임으로 폐지함.

주요골자

이 조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조례임.

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(조례제 1471호, 1986. 1. 24)를 이에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